

COVID-19 산업별 지침:

카드게임 방, 위성 베팅 시설 및 경주 트랙

2020년 7월 29일

모든 지침은 100,000명당 증례를 포함한
현지 역학 데이터 검토 후 카운티 보건
담당관의 승인과 검사 양성 비율, 의료
서비스 급증, 취약 인구, 접촉 추적,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현지 준비에 따라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직원 및 고객/손님의 안면 가리개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에서 새로운 질병 사례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해 공중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이 문서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카드게임 방, 위성 베팅 시설 및 현장 베팅이 갖춰진 경주 트랙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카드게임 방 내에서 운영하는 제안 플레이어 서비스 제3자 제공업체(Third-Party Providers of Proposition Player Services, TPPPS)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호텔, 레스토랑, 바, 스파, 살롱,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나이트클럽, 라운지, 컨벤션, 실내 및 실외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운영 또는 리스하는 카드게임 방, 위성 베팅 시설 및 현장 베팅이 갖춰진 경주 트랙은 해당 시설이 한정된 상태로 재개하거나 완전한 운영이 허용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폐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경주 트랙은 현재 관중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갖춰진 카드게임 방, 위성 베팅 시설 및 현장 베팅이 있는 경주 트랙이 한정 운영 또는 완전 운영 형태로 재개장될 경우, [COVID-19 회복 로드맵 웹사이트](#) 상에서 산업 지침 문서의 사용이 가능해지면 참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음악 또는 기타 공연을 포함한 모든 공공 행사 또는 밀집된 모임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 규범적 권리 및 단체 교섭으로 얻어낸 권리를 박탈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캘리포니아/OSHA의 모든 기존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¹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 및 주/현지 명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Cal/OSHA는 [COVID-19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Cal/OSHA 일반 지침 웹페이지](#)에서 더욱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사업체 및 고용주들에 대한 [지침](#) 을 통해 추가적인 요건을 제공합니다.

*카드게임 방 및 TPPPS는 운영 재개 전 캘리포니아 도박 제어 위원회(California Gambling Control Commission, commission@cgcc.ca.gov)와 도박 제어국(Bureau of Gambling Control, gamblingcontrol@doj.ca.gov)에 작업장에 특화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밖에서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경우
- 대중 속의 사람들이 업무 시점에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 속의 사람이 방문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음식이 준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포장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
-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개인의 가정이나 거주지 제외)
-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 또는 보조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승객이 없을 때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질환으로 인해 이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최하단 가장자리 부분에 길게 덮는 천(드레이프)이 부착된 안면 보호대와 같은 비제한적 대체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질환 상태가 이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업종은 [CDPH 얼굴 가리개\(마스크\) 관련 지침](#)에 있는 얼굴 가리개(마스크) 착용 면제 경우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일반 대중의 어떤 사람도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얼굴 가리개(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체는 고객과 손님, 방문자, 직원 중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시설마다 업무 공간별로 COVID-19 예방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업무 공간 및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각 시설마다 해당 계획을 시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 [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보건부의 연락처를 알아 두십시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해당 시설이 계획 및 문서 내용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함이 확인된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CDPH 지침](#)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 동안)한 사람을 찾아내고 COVID-19 양성 직원을 격리하고 밀접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COVID-19](#)에 대한 정보 및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COVID-19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기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 [CDC 지침](#)에 따라 체온 또는 증상 확인 등 자택 내 자가 선별 검사 방법.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근로자가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신체 통증, 두통, 새롭게 발생한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 인후통, 울혈 또는 콧물, 메스꺼움, 구토 또는 설사 등 [CDC에서 설명하는](#) COVID-19의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처음 발현한 이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을 겪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첫 번째 COVID-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항목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안면 가리개 사용:
 -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야 합니다.
 -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얼굴 가리개(마스크)는 공유할 수 없으며 각각의 근무 후 세척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 또한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요한 물품과 PPE를 갖추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 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OVID-19로 인한 병가 및 산재 보상금 지원 정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에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안](#)에 따른 근로자의 병가 권리, 그리고 주지사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하여 본 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산재 보상 혜택 및 COVID-19와의 업무 연관성 추정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와 공급업체, 계약업체 직원 및 일반 대중에게 체온 및/또는 증상 스크리닝을 제공합니다. 체온/증상 검사자는 최대한 직원 및 고객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 해당 시설에서 스크리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서, 근로자가 집에서 자체 스크리닝을 실시해야 할 경우, 해당 스크리닝은 근무자가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기 전에 실시해야 하며 위의 근로자 교육 섹션 내 주제에서 설명된 대로 [CDC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자체 스크리닝은 해당 시설 출입 전에 반드시 스크리닝을 받아야 하는 일반 대중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프거나 COVID-19의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또는 일반인은 가정에 머물거나 돌아가도록 합니다.
-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직원이 눈 보호 장비 및 장갑을 비롯한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직원은 체액으로 오염된 물품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얼굴 가리개(마스크) 착용 의무와 물리적 거리두기 실행, 최소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얼굴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중요하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일반 대중이 방문 계획 전에 이러한 COVID-19 예방 조치를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웹사이트나 홍보 자료 등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잊어버리지 않게 고객들에게 미리 얼굴 가리개를 가져오셔야 한다고 알려 드리고 도착한 분 중에서 얼굴 가리개를 가져오시지 않은 분에게는 되도록이면 얼굴 가리개를 제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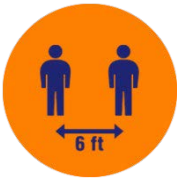


청소 및 소독 절차

- 로비, 대기 공간, 휴식 공간 및 계단,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과 엘리베이터 계기판 등의 진출입구 영역과 같이 왕래가 잦은 구역에 대해 철저한 세정을 수행합니다. 카운터, 신용카드 기계, 클립 터미널, 터치스크린, 팔걸이, 화장실, 손 세정 시설, 도어 핸들과 잠금 장치, 차량 키 및 전시 중인 차량(스티어링 휠, 도어 핸들, 좌석 조정 컨트롤, 라디오 등)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합니다.
- 가능하다면 전화, 태블릿, 사무실 장비 또는 도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작업 표면, 키, 칩, 게임 테이블 레일 및 의자, 주사위 및 타일, 카드(사용 후 폐기하지 않은 경우), 전자 플레이 북 양식, 터치스크린, 시간기록계, 청소 장비, 고정식 및 이동식 장비 제어 등 근무 교대 사이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 공유(둘 중에서 더 잦은 공유가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되어야 하는 장비와 가구를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합니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세정 작업은 근로자 직무의 일환으로서 근무 시간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 손 소독제와 소독용 물수건 등 적절한 위생 제품을 터미널, 데스크 및 헬프 카운터에 비치하고, 고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직원에게 개인용 손 소독제를 제공합니다.
- 이러한 위생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비누와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 개인 위생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 여기에는 티슈와 비접촉식 쓰레기통, 손 비누, 손 씻기 충분한 시간, 알코올을 주 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 소독제, 일회용 타월이 해당됩니다.
- 소독용 화학물질 선택 시, 고용주는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승인](#) 목록에 수록되었으며 COVID-19에 대해 사용하도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사용 설명서를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나 소독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제품 지침에 따라 필요한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권장하는 [천식에 더 안전한 세정 방법](#)을 따르고 적절하게 환기해야 합니다.
- [레이오넬라 폐렴](#)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의 시설 폐쇄 후에도 모든 물 관련 시스템과 기능(예. 음수대, 장식용 분수)의

사용이 안전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리셉션 공간, 로비, 게임 테이블, 레스토랑 입구, 회의 및 컨벤션 공간, 엘리베이터 로비, 휴식 공간, 시간기록계 위치, 케이지(실내 및 외부 모두) 쇼룸, 로비 및 서비스 구역에 고객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 디스펜서(가능한 경우 터치리스)를 제공합니다.
- 정기적으로 철저한 세척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이블 또는 기계 작동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되도록이면 움직임 감지 조명,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자동 비누 및 종이 수건 디스펜서, 출퇴근 기록 카드 시스템 같은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제품을 수령할 때 배송물을 검사하고 필요한 모든 소독 조치를 취하십시오.
- 가능한 경우,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의 설치와 가능한 최고 효율 제품으로의 건물 공기 필터 업그레이드 및 사무실 및 기타 공간에 외부 공기의 양을 늘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변경사항 적용을 검토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직원 및 고객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파티션 또는 시각적 표시(예. 바닥 표시, 색상 테이프 또는 근로자 및/또는 고객이 서 있어야 하는 장소를 표시하는 표식)의 사용이 포함되며 이는 계산대 및 터미널, 화장실, 엘리베이터 로비, 호스트 스탠드 및 대기 공간, 주차 대행 위치 등 고객이 줄을 서거나 모이는 모든 곳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캐셔나 기타 근로자 및 고객 사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Plexiglas나 기타 불투과성 장벽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고객 및 타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 변경 옵션(예. 딜러, 서버, 캐셔 근무 대신 재고 관리 또는 전화 상으로 관리 요구사항 처리) 요청 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 출입구, 케이지 카운터, 화장실, ATM 기계, 티켓 교환 스테이션, 게임 테이블 등에 표지판을 디스플레이해 고객에게 물리적 거리두기와 얼굴 가리개(마스크)의 적절한 사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행하는 손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 회의를 조정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시설 내에서 소규모 개별 회의를 활용해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킵니다.

- 근로자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의실 수용 인원을 줄입니다.
-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장벽을 사용하거나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 직원들을 분리하고 휴식 중에 모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차양 커버와 좌석이 배치된 실외 휴식 공간을 만듭니다.
- 사무실 공간, 게임 테이블, 캐시 케이스, 회의실 등을 재구성해 작업공간에서 근로자와 고객 사이에 6피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비품실과 같은 밀폐된 지역 내의 근로자 수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적용해 최소 6피트의 간격을 확보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를 제한합니다.
-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고객과 근로자가 물리적인 접촉 없이 불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셀프 서비스 커피, 물 및 간식 구역을 폐쇄합니다.
- 가능하다면 단일화되어 명확히 지정된 입구와 별개의 출구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일반 대중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추가 지침

- 현금인출기, 게임 테이블, ATM 기계, 티켓 교환 기계, 캐시 케이스, 베팅 창, 화장실 등 대기나 칩, 카드, 돈, 티켓 등에 대한 처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손 소독 스테이션을 설치합니다. 필요에 따라 소독 스테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일반 대중과 근로자가 장시간 특정 물품(카드 또는 칩)을 주고 받을 경우,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도록 하고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표식 및/또는 구두로) 상기시킵니다.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테이블에 일회용 장갑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장갑이나 기타 물품이 제공되는 모든 사업장에 폐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 달러 교체 사이에 철저히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합니다.
- 플레이어가 카드를 만지는 카드 게임의 경우, 각 달러 교체 시, 사용된 카드는 폐기 및 소독한 후 바이러스 오염이 남아 있지 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인 최소 7일(현재 가용한 가장 잘 알려진 정보에 기반)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플레이어가 카드를 만지지 않는 카드 게임의 경우, 최대 8시간 사용 이후, 사용된 카드는 폐기, 소독, 살균하거나 최소 7일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달러는 각 카드 테이블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과 테이블 교체가 끝나는 즉시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모든 칩은 사용 전에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칩은 달러 교체 시 마다 사용 중단 후 깨끗한 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고객 및 근로자가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블, 의자, 기계, 게임 테이블 등을 게스트 구역에서 제거합니다. 이러한 물품을 옮길 수 없는 경우, 시각적 표시를 사용해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거나 Plexiglas 또는 기타 불투과성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 고객 간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 게임 테이블 참여자 수를 줄여 고객이 물리적 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불투과성 장벽을 설치합니다. 고객이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어길 가능성을 높이는 게임 비참여자의 게임 관람을 중단합니다.
- 게임 테이블에서의 식사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공용 공간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음료를 주문 받은 후 전달합니다. 여러 가족으로 구성된 고객들이 참여한 테이블에서 음료를 제공할 경우, 뚜껑이 있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베틱 창이 있는 경주 트랙과 위성 베틱 시설의 경우, 6피트 간격 확보를 위해 베틱 창을 폐쇄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가능한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체 장소에 추가적인 사업장을 개소하고 불투과성 장벽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장소에서 소독 스테이션을 제공합니다.
- 경주 트랙과 위성 베틱 시설의 좌석 공간을 재구성해야 하며, 필요시 장벽 설치를 포함한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에 따라 구역 폐쇄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일반 대중의 개인 위생을 증진하기 위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티슈, 노터치 쓰레기통, 손비누, 손 씻기와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소독제 및 일회용 타월의 적절한 배치가 포함됩니다.

1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 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